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항의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 중 “지정할”을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교육 시설 및 교육 관련 장비 현황 1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강사 보유 현황 3부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지정할”을 “지정한다”로 한다.

-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는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6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의 기준란 제1호 중 “영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을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20조제5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을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주소)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비상진료기관의 종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교육 시설 및 교육 관련 장비 현황 1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감사 보유 현황 3부	수수료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지정서 작성·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 사항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지정서 작성·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u>법 제20조제3항</u> 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u>법 제20조제4항</u> ----- -----.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u>법 제32조제3항</u> 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u>법 제32조제4항</u>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① <u>법 제36조제2항</u> 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① <u>영 제33조의2제1항</u> 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1. 교육시설: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과 시설	

2. 교육장비: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장소별 또는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 효율적 교육수행 방법 등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1.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원전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 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교육 관련 장비 현황 1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강사 보유 현황 3부

<삭 제>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
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3부

2.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3
부

3.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설 현황

1부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이나 강사에 관한 세부요건, 방
사능방재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삭 제>

<삭 제>

③

지정 한

<삭 제>

수립 및 제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는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_____

_____ 지정 한 _____

다. <u>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u> <u>4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u> <u>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u> <u>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u> <u>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u> <u>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u> <u>야 한다.</u>	--. <u><삭 제></u>
---	--------------------------------------